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구의회에 들 수 있는 전문위원 정수를 조정하고, 별정직(영양사)의 근속승진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II. 주요골자

- 구의회사무국 : 전문위원
 - 별정직 6급 상당 1명 증원, 행정직 7급 1명 감축
- 구 본청 : 별정직(영양사) 근속승진
 - 행정직 7급 1명 증원, 행정직 9급 1명 감축
 - 별정직 7급 상당 1명 증원, 별정직 8급 상당 1명 감축

III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전문위원 1명 증원 및 별정직 영양사 근속승진 등 정원조정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,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써,
- 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제3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19824호) 제10조의3 별표 5의2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의 수를 5급 2명, 6급 1명 등 총 3명이내로 들 수 있고, 또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으로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 바,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.

○ 참고로 총 정원 범위내 기관별,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단위:명)

구 분	총 계	집 행 기 관				구의회 사무국
		소 계	본 청	보건소	동	
총 계	1,259	1,233	906	87	240	26
일반직 계	887(△1)	874	601	71	202	13(△1)
7급	257	254(+1)	172(+1)	26	56	3(△1)
9급	117(△1)	116(△1)	84(△1)	3	29	1
별정직 계	15(+1)	8	8			7(+1)
6급 상당	4(+1)	3	3			1(+1)
7급 상당	9(+1)	5(+1)	5(+1)			4
8급 상당	1(△1)	0(△1)	0(△1)			1

IV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

제59조 (전문위원)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(이하 "전문위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,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를 한다.
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1조 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(2007. 1. 5. 대통령령 제19824호)

제10조의3 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②시·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의2와 같다. <개정 2006. 6. 29>

[별표 5의2]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

(제10조의3제2항관련)

2. 시·군·자치구

지방의원의 정수	전문위원		
	총 정수	5급	6급이하
15명이하	3명 이내	2명	1명

비고. 2.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 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.

제21조의4 (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.

제26조 (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·규칙의 입법예고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.